



즉시 배포용: 2022년 11월 30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 항소부, 제4부 사업부 판사로 E. JEANNETTE OGDEN 임명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센트럴 및 웨스턴 뉴욕에 근무하는 뉴욕주 항소부 제4사법부에 E. Jeannette Ogden 판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30년 동안, E. Jeannette Ogden 판사는 공정하게 법무직을 수행하며 웨스턴 뉴욕 주민을 위해 법치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저는 제4부 항소부에 Ogden 판사를 임명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그가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E. Jeannette Ogden 판사는 2015년부터 뉴욕주 대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대법관이 되기 전, Ogden 판사는 버펄로 시 법원에서 판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리 카운티 가족법원 및 카운티 판사 대행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Ogden 판사는 또한 뉴욕 주립 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버펄로 로스쿨(Buffalo Law School)의 겸임 강사이자 대멘 칼리지(Daemen College) 겸임교수입니다. 그는 전국 여성 판사 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Judges), 뉴욕주 사법윤리 자문 위원회(NYS Advisory Committee on Judicial Ethics), 이리 커뮤니티 칼리지 사법 정의 자문 위원회(Erie Community College Criminal Justice Advisory Council), 제8 지역구 젠더 인종 공정성 위원회(Eighth Judicial District Gender and Racial Fairness Committee), NAACP, 웨스턴 뉴욕 여성 변호사 모임(Women Lawyers of Western New York)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Ogden 판사는 또한 고등학생, 대학생, 로스쿨 학생의 멘토로 활약하고 있으며, 시민 및 지역사회 단체, 공립학교, 교회 등에서 강연자로 나서기도 합니다.

Crystal Peoples-Stokes 하원 여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의 결정으로 E. Jeanette Ogden 대법관의 대법관 항소부 제4부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Ogden 판사는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저는 그가 웨스턴 뉴욕 주민들을 위해 뉴욕주 법과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훌륭한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John J. Flynn 이리 카운티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Jeanette Ogden 판사는 약 30년 동안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의 법적

지식과 전문성은 제4 항소부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임명된 **Ogden** 판사께 축하를 전하며, 뉴욕 주민을 위한 활약을 기대합니다."

Byron Brown 버펄로 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Kathy Hochul** 주지사가 제4부 항소부에 **E. Jeanette Ogden** 판사를 임명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 버펄로 시 법원에 임명된 이후, 그리고 지금 뉴욕주 대법관으로 근무하면서, **Ogden** 판사는 웨스턴 뉴욕을 위해 헌신했고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Ogden** 판사가 그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심분 발휘하여 제4부에 신선하고 사려깊은 시각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항소부 제4부 사법심사위원회(**Judicial Screening Committee for the Appellate Division**)는 지원서를 검토하고 수십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고도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 지원자만이 주지사의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도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후보자는 반드시 무결성, 독립성, 리더십, 지성, 법적 능력, 판단, 기질 및 경험을 보여야 했습니다.

뉴욕주 헌법(**New York State Constitution**) 및 사법 법령(**Judiciary Law**)에 따라 주지사는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선출된 사람들 중 각각의 항소부에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명은 상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